

제13차위원회(2003. 11.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결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대법원·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3. 9. 30
2. 회부일자 : 2003. 9. 30.
3. 상정일자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2003. 11. 4) 상정·대체토론
(법무부)

제11차 위원회(2003. 11. 5)
· 상정·대체토론(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부
패방지위원회)
· 소위원회 회부(법무부·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

제12차 위원회(2003. 11. 6)
· 상정·대체토론(대법원·감사원·법제처)
· 소위원회 회부(부패방지위원회·대법원·감사원·법
제처)

제1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2003. 11. 6)
· 상정(법제처·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 의결(법제처·헌법재판소)

제2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2003. 11. 7)
· 상정(법무부·감사원·대법원)
· 의결(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법무
부·감사원·대법원)

감리비	6,025만원
시설부대비	△314만원
자산취득비	△16억원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출

○ 규 모

2004년도 예산안	196억6,700만원
2003년도 예산	189억1,900만원
증(△)감	7억4,800만원(3.9%)

○ 주요증(△)감요인

인건비	4억7,100만원
기본사업비	2억3,600만원
주요사업비	4,100만원

○ 주요증(△)감요인

인건비	3억2,100만원
기본사업비	-
주요사업비	1억8,900만원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출

○ 규 모

2004년도 예산안	164억3,200만원
2003년도 예산	159억2,200만원
증(△)감	5억1,000만원(3.2%)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한길)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가. 예산증감추이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196억 6,700만원으로서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5.4% (2003년도 본예산 대비)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주요사업비가 2003년도 예산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주로 기인함.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안은 인권위 출범당시인 2002년도 예산(192억 300만원)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수준(2.4%)에 그치고 있음.

<최근 3년간 인권위 예산증감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02		'03		'04	
	예산	증감율	예산	증감율	예산	증감율
합계	19,203		18,919	△1.5	19,667	3.9
인건비	5,309		7,199	35.6	7,670	6.5
기본사업비	9,372		6,355	△32.2	6,591	3.7
주요사업비	4,522		5,365	18.6	5,406	0.8

※ '02년도 신규(예비비) 편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 10 현재 정원 180인 가운데 9인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역은 조사기획담당관·법제개선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부서 책임자급에서 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인권위 사무처가 발족('02. 4)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주요부서 핵심인력의 조속한 충원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행정부처·시민단체·공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충원된 인권의 인력구조를 감안하여 인권위 조직의 통합을 다져가는 작업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최근 3년간 인권위 정원대비 현원현황>

구분	'01			'02			'03/10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총계		4		180	164		180	172	

나. APF 활동지원 기부금

예산과목 해외경상이전(307-01)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권기관간의 상호 교류·협력기구인 “아·태 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의 활동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서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기구 지원금 성격의 해외경상이전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매년 반복하여 계상되는 속성을 띠므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현시점에서 당해 국제기구의 성격,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액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먼저, APF의 개황을 살펴보면, APF는 1996년 7월에 창설되어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2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의 상호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가입하였음.

<APF 회원국(12개국) 현황>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피지, 스리랑카, 몽고,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APF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번에 APF에 대한 기부금 예산이 반영될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권이 주도하고 있는 APF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APF 재정지원국이 되어 APF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UN 등 각종 국제기구의 인권활동에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장차 APF 사무국에 인권위 직원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자료수집 및 교류협력의 기반 마련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여 짐.

<APF 재정지원 현황>

(2002년 기준)

재원	지원금	환율('03.5 현재)	한화(원)
계			1,126,340,000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820,000호주달러	772원	633,040,000원
호주 정부	550,000호주달러	"	424,600,000원
뉴질랜드 정부	100,000뉴질랜드달러	687원	68,700,000원

한편, 기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APF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엔,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세 곳으로부터 연간 11억 2,634만원('02년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APF 12개 회원국들간 경제력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회원국중 GDP 및 GNI 2위, 1인당 국민소득 3위) 및 우리나라의 여타 국제기구 지원금과의 규모비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계상된 APF 기부금 (연1억원)의 규모는 비록 뉴질랜드의 지원규모보다는 많으나 그리 과도한 계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짐.

<APF 12개 회원국 경제력 비교>

국가별	GDP(백만)	GNI(백만)	1인당 국민소득	비고
한국	476,690	473,050	9,930	US 달러 기준
호주	410,590	386,623	19,740	
뉴질랜드	58,178	53,055	13,710	
인도	515,012	501,532	480	
몽골	1,262	1,088	440	
필리핀	77,076	81,453	1,020	
태국	126,407	122,240	1,980	
말레이시아	95,157	85,956	3,540	
인도네시아	172,911	149,879	710	
네팔	5,493	5,620	230	
스리랑카	16,373	15,894	840	
피지	1,878	1,775	2,160	

* 자료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2003.6월)

<한국정부의 주요 국제기구 지원현황>

정부 부처	지원대상 국제기구	지원금	예산과목	기타 (지원형태, 지원시기 등)
노동부 (국제협력관)	ILO (국제노동기구)	연600만달러 (60억정도)	국제기구 출연금	○분담금 형태 ○모든 회원국이 다 분담금을 내며, 기준은 나라별 인구규모, GDP, 경제규모에 따라 매년 UN에서 Guideline이 나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WFD (세계보건기구 사무처(WFRO))	- 1999년, 1억원 (7만5천달러) - 2000년, 3억5천만원 (약 30만달러) - 2001년, 10억원 (77만6천달러)	해외경상 이전과목	○기여금(자발적 기여금 형태) ○Membership fee는 아니며, 지원국은 미국, 영국, 베넬란드, 일본, 한국 등 ○특정사업 지정하여 특정사업 시행시 한국의 승인을 거침
문화관광부 (체육국)	국제도핑센터	연 8만달러		○국제협약의 일종으로 회원국의 회비형태로 지급
외교부 (UN정책과)	UN 인권고등 판무관실	연 10만달러 정도	국제기구 분담금	○기술협력기금(자발적인 기여금 형태) ○해당 당사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기여금 지불

*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번 APF 재정지원은 그 기대효과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신규예산의 시급성 내지 불요불급성의 측면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

즉, (1) 현재 APF의 12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지원국은 지난 96년 APF 창설을 주도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등 2개국에 불과한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APF에 회원국으로 가입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되었다는 점²³⁾, (2) 동북아인권워크샵 · APF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예산 및 국제인권기구 교환연수 등 인권위 자체예산에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 관련예산이 유사 인력규모의 여타 행정기관에 비하여 풍부하게 배정되어 있어 APF 기부금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위가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예산상 마련되어 있는 점²⁴⁾, (3) 기타사항으로서, 인도 국가인권위원장이자 APF 의장인 A. S. Anand 의장이 금년 5월 우리 정부에 APF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는 등 인도의 경우 현재 APF 재정지원국이 아니면서도 APF 의장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국제기구 재정지원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APF의 비회원국/비재정지원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APF에 대한 기부금 예산의 신규편성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고도 절박한 예산이나에 대하여는 회의적으로 판단됨.

23) 우리나라와 APF 사무국간 자금지원 협의도 최근(2003. 8월)에 진행된 바 있음.

24) APF기부금(1억원), 동북아인권워크샵(2억원) 및 국가인권기구교환연수(3,800만원)등의 대외활동예산과는 별도로, APF 연례회의 · APF 워크샵 · UN주관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인권회의 참석예산으로 2억 1,068만원 (예산과목 1151-215), 외국인권기구등 방문예산으로 4,417만원 (국외여비 1151-202-02) 등 2억 5,485만원의 해외방문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예산안 명세서 92-93쪽 및 101-105쪽 각 참조).

아울러, 이번에 우리 법사위원회 소관인 헌법재판소의 2004년도 예산안에서도 해외경상이전과목에서 “베니스 위원회” 분담금 명목으로 5,800만원(헌법재판소 예산안 명세서 p76)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등 최근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또는 분담금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차제에 우리 정부의 각종 해외경상이전에 대한 개별적 타당성 및 시의적절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음.

(참고로, 일반 행정부처의 개별적인 국제기구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만 2004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이 1,423억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14.9%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아래 도표 참조)

<2004년도 외교통상부소관 국제기구분담금(1,423억원) 증액 내역>

2004년 예산안	2003년 예산	증 감	경 비 내 역
1,423억 2,360만원	1,210억 5,280만원	212억 7,080만원 (14.9%증가)	1. UN정규예산분담금: 288억 7,560만원 2. PKO 분담금: 494억 7,120만원 3. 기타 의무분담금: 515억 1,360만원 4. 사업분담금: 94억 320만원 5. 협력기금: 36억6,000만원

* 자료출처: 대한민국정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II', 63쪽.

다. 인권순회상담사업

인권순회상담사업은 지방하부조직이 없어 지방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순회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관련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현지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취지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 1억 1,400만원을 2004년도에 새로이 계상하고 있음.

<인권순회상담 예산>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계	-	114	114	순증	
○ 순회상담 기획 및 진행경비	-	59			
○ 순회상담 안내 광고	-	55			

인권순회상담사업의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인권위에서는 5개 지방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에 각 2일씩 순회상담을 실시하면서 지역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바, 지난 해 4월 사무처가 발족되어 아직 기관형성의 와중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위 업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권 순회상담센터의 운영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순회상담사업의 실시 초기에는 5대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순회상담하려는 인권위 계획이 그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인권 접근성이 보다 떨어지는 기지촌·광산촌 등 소도시·벽지에 대한 순회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본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업의 행사기간이 각 도시별로 2일간에 불과하여 일회성 홍보경비로 그칠 우려가 없지 아니하고, 지역 시민단체나 법률구조공단·지방변호사협회 등에서 종래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인권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권위 나름대로 순회상담의 실효성 및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라. 인권관련 문헌번역사업

인권관련 문헌번역사업은 UN 등 국제기구 및 인권관련 기관에서 출판된 문헌을 번역·보급함으로써 인권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와 인권교육자료로 활

용하기 위한 사업인바, 지난 해(7,200만원)에 이어 2004년도 예산안에서는 7,000만을 계상하고 있음.

<인권관련 문헌번역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 인권관련 문헌 번역	72	70	△2	△2.8	

설립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이나 주요 선진국의 인권관련 법률·문서 등을 번역, 축적함으로써 인권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법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 국내유관기관에도 이러한 번역자료들의 보급·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헌번역사업 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헌번역사업을 일정기간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아래 도표 '번역사업의 추진방향' 참조),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인권연구담당관 등 인권위 자체의 관련 조직이 안정화되고 인력의 전문성이 축적되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헌번역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굳이 외부용역화할 필요가 있는냐의 문제, 나아가 외부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유형의 외국 문헌을 번역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인권위 번역사업 추진방향>

<인권법령시스템 구축사업>

구분	'03 사업	'04 전망	'05전망	'06전망
인권 문헌 번역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공식문헌 중 조사, 인권교육, 국제협력, 정책 등 인권위 업무지원 및 현안중심으로 번역 문헌 목록 작성 총4,658쪽 분량 번역 문헌 선정 2,908쪽 분량만 우선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년도 지속 사업으로 '03년 선정문헌 중 나머지 1,750쪽 문헌 번역 완료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선택적 의정서 검토서 지속 번역 기타 유엔 공식 문헌(Fact sheets)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년도 지속사업 EEOC, 유럽인권 재판소, 호주인권 위원회, 캐나다인권위원회 등에서 출판된 차별행위 관련 문헌 번역 인권활동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 WHO, ESCAP 등 국제 기구 출판문헌 중 사회권 관련 문헌 번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계	-	54	54	순증	
○ 협의체 회의 운영		37	37		
○ 기초자료 축적 위탁 수수료		17	17		

이 사업의 골자는 인권관련법령에 대한 검토협의 및 개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1년간의 협의체의 구성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때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정부입법에 대비하여 의원입법의 비중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인권법령시스템의 구축시 의원입법과 관련된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회의 법제지원조직(법제실) 등과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령정비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5,400만원의 예산을 2004년도에 신규 계상하고 있음.

바. 연구개발 용역비

인권보호정책 및 체도구축사업의 용역비 (예산과목 212-206, 예산안 명세서 79쪽) 에서는 '인권상황실태조사'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8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지난해 예산(8억4,000만원)에 비해서는 0.5%가 감액된 규

모임. 동 용역사업의 경우 설립초기의 인권위 입장에서는 국내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권상황 개선 및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동 예산의 실제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9월 결산 검토보고에서는 '인권상황실태조사' 명목의 용역비 집행에 대한 일부 문제점, 즉, 외부 용역을 발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간단한 법률검토 등의 경우에는 인권위 자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비의 예산 및 집행추이를 살펴보면, 예컨대, 외국인·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 차별조사 등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비의 경우 당해사업이 연도별로 반복되어 집행되어지는 중복의 측면이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집행된 용역사업의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여 이러한 용역사업과 민간단체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과목 304-02)에서 집행되는 일부 사업과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노출되고 있음.

위와 같은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당해 용역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

예산과목 민간경상보조(304-02)에서는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공모를 통하여 민간 인권단체의 추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이들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비 고
			금 액	%	
○ 인권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200	200	-	-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데에는 각종 인권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인권관련단체가 특화·전문성 수준 및 재정적 측면에서 빈약한 실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민간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다음 도표의 2003년도 인권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각 단체별 지원규모가 상당한 편차(300만원~1,365만원)를 보이고 있어 다소 불균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인권위보다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적합한 대상(예컨대, 환경운동연합→환경부, 건

강연대→보건복지부)으로도 비추어 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현행 민
간단체지원에 대하여는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인권
위 차원의 노력이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아. 북한 인권 관련사업

그동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미국부부의 연례인권보고서 등을 통하
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2003. 4월 우리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촉구
함에 따라 인권위 내부에 '북한인권연구팀'이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북
한인권 관련사업이 이번 2004년도 인권위 예산안에는 빠져 있는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자. 2004년도 세출예산안 조정의견

이상의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토대
로 동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단위 : 천원)

예산안				증감액 (B)	조정액 (A-B)	비 고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안(A)			
1151 교육협력국	219 APF 활동지원	307 해외경상이전	100,000	△100,000	-	APF기부금 삭 감
1111 인권정책국	213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206 용역비	800,000	△100,000	700,000	용역비 감액 조정

* 참고자료

[별표1]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2003년 예산(A)	2004년 예산 요구			2004년 예산안		
		요구액(B)	증△감 (B-A)	%	조정액(C)	증△감 (C-A)	%
계	18,919	24,316	5,397	28.5	19,667	748	4.0
1. 인 권 비	7,199	7,703	504	7.0	7,670	471	6.5
2. 기본사업비	6,355	7,172	817	12.9	6,591	236	3.7
- 정상적기본사업비	5,887	7,172	1,285	21.8	6,591	704	11.9
- 기준성기본사업비	411	-	△411	순감	-	△411	순감
- 교육훈련기본사업비	57	-	△57	순감	-	△57	순감
3. 주요사업비	5,365	9,441	4,076	75.9	5,406	41	0.8
- 인권의식 홍보강화	357	972	615	172.3	357	-	-
-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423	505	82	19.4	419	△4	△0.9
-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169	293	124	73.4	179	10	5.9
- 인권순회상담	-	141	141	순증	114	114	순증
- 인권청문회 운영	34	86	52	152.9	34	-	-
-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944	1,640	696	73.7	982	38	4.0
- 인권법령 정비시스템 구축	-	65	65	순증	54	54	순증
- 인권정보화사업비	1,143	1,751	608	53.2	962	△181	△15.9
- 인권침해 조사구제기법 개발	163	102	△61	△37.4	41	△122	△74.8
- 인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224	480	256	114.3	291	67	29.9
- 인권관련 단체 지원	200	217	17	8.5	200	-	-
-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제	1,026	1,268	243	23.7	904	△122	△11.9
- 인권교육 교재 발간	320	387	67	20.9	320	-	-
- 국제인권회의 참석	211	313	102	48.3	211	-	-
-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	38	38	-	-	38	-	-
- 동북아 인권 워크샵 개최	-	298	298	순증	200	200	순증
- APF활동 지원	-	100	100	순증	100	100	순증
- 인권상담 방법론 개발	-	88	88	순증	-	-	-
- 인권아카이브설치 및 운용	-	338	338	순증	-	-	-
-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	112	112	순증	-	-	-
- 주요 인권현안 법령정비	-	135	135	순증	-	-	-
- 국제인권전문인력 양성	-	112	112	순증	-	-	-
- 언론모니터링 및 캠페인	75	-	△75	순감	-	△75	순감
- 차별행위 판단 기준 정비	38	-	△38	순감	-	△38	순감

【별표2】

2004년도 예산안 주요증감 명세

(단위:천원)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증 감	
			금액(%)	사유
인 건 비	7,199,410	7,670,455	471,045 (6.5)	- 공무원 보수인상 계획에 따른 처우개선(3%)분 반영 - 일반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17명) 채용
주요사업비	5,364,645	5,405,586	40,941 (0.8)	- 인권순회상담 순증(114백만원) - 동북아인권워크샵 순증(200백만원) - APF활동 지원 순증 (100백만원) - 인권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순증 (54백만원) - 정보화사업비 감액(181백만원) - 언론모니터링 및 캠페인 등 감액 (246백만원)
기본사업비	6,354,689	6,591,231	236,542 (3.7)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에 따른 증액(236백만원)
계	18,918,744	19,667,272	748,528 (4.0)	

【별표3】 최근 3년간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및 집행추이

1. 2002년도 실적 : 예산(연구용역비) 750백만원, 집행 645백만원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업체명	집행액
기 반 연 구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에 대한 연구	전국대학교	10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10
	군대 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성공회대학교	29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 의식 개선방안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0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교	22
	취학연기로 인한 취업연령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동의대학교	15
진 정 사 건 관 련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10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55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32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교도소인권모임	21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60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	대구대학교	29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15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법무법인 지평	15	

2. 2003년도 실적 : 예산(연구용역비) 840백만원, 집행 565백만원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업체명	집행액
부서필요	구급시설 내 진정권 보장현황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1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25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교육연구소	29
기획사업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부랑인 시설 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17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한국노인의전화	70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검토	법무법인 해랍, 연세대학교, 동해대학교, 전주대학교	12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한양대학교	15

(백만원)			
구분	사업명	업체명	집행액
기반연구	구급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23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5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23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성폭력상담소	33
	주거빈곤층 사회권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1
	차별관련 법령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5
전쟁사건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40
부서필요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레방	27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9
	사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주)코리아메이타네트워크	73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9
	구급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의국어대학교	20
인권현안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9
	사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	가톨릭대학교	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68
	비정규직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릉대학교	39

※ 11월 중 4개 과제 공고 예정:

공무원 차별관련 인권의식 조사 등 4개과제 275백만원

【별표4】 2003년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사업명	단체명	지원액
1	사병의 인권 및 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7,950
3	군인의 전화	군의문사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첩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3,650
7	'빅브로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인권단체연합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600
10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행을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13,000
11	교칙을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홍사단	5,350
12	여성 장애인 성매매 유인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과 실천프로그램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0,100
13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9,270
14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익산YMCA	4,610
15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엌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 레 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DPI	9,066
1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리기사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건대책위	6,79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경의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희귀난치 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척척병환우회	7,744
합 계			200,000

3. 2004년도 예산안 : 총 20개과제 연구용역비 800백만원

구분	분야	과제명	비고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 인권상황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인간배아복제 관련 생명권 보호방안 기초연구		
기반연구	자유권	미신고 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쉼터 거주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구급시설 수용 환경 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인권 실태조사		
	평등권	대중교통시설의 장애인 이동권보장 현황조사		
		공공기관 장애인 이동권 현황조사		
		출소 후 전파자의 차별실태조사		
	사회권	독거노인 인권상황실태조사		
		소년소녀가장 인권상황실태조사		
		한부모가정의 인권상황실태조사		
		한계적 빈곤층 인권상황실태조사		
	인권현안	부서필요	외국인노동자 지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채용 전 신체검사에 따른 고용차별 실태조사	
여성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주요현안		공공부문 고용차별 실태조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일상생활에서의 사생활보장 실태조사		
인권의식		전국민 인권의식 조사		

【별표5】 2002년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의 예산안 반영여부

2002년도 결산시 지적사항	2004년도 예산안 반영여부
1. 도서구입사업의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	· 2004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은 2억 1,267만원으로 2002년 (4억 5,480만원)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2003년(1억 7,405만원)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음.
2. 국제회의 관련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관한 사항 (UN 및 APF 관련 국제회의예산으로 일본, 캐나다 등의 인권기관방문 등으로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예산집행)	2004년도 예산안에는 UN 등 국제인권회의 참석예산이 2억 1,068만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2억 1,063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3. 간단한 법률검토 사안을 인권위 자체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외부 용역으로 처리	· '인권상황실태조사' 명목으로 연구개발 용역비 (예산과목 212-206-01)가 8억원 계상되어, 지난해 8억4,000만원에 비해서는 0.5%가 감액됨.
4. 인권영화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전용절차를 미준수	· 인권영화제작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5억 7,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5. 과태료 미수납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안과는 해당사항 없음.

- 한·일 및 한·중 감사원간 교류사업비를 매년 예산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남경학원 교류예산을 별도로 예산편성할 필요성 여부
- 전체예산 중 감사활동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여부
- 공기업 해외투자사업 추진실태 특별감사의 실익 및 필요성 여부

5. 대법원소관

- 모든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 사범연수생 보수 관련 타당성 여부
- 호주제 폐지의 경우에도 호적업무 전산화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57억여원이 필요한가
- 연합통신프린터 한글수신료의 필요성 여부
- 전주 및 청주에 고등부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 법원행정처장의 해외순방시 다른 대법판과의 동행 필요성 여부
- 야간·휴일법정운영 연료비의 필요성 여부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APF기부금 관련, 인권위 조직이 아직 일천하고 APF가입도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APF기부금은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UN분담금

과 같이 회원국 공동분담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한 견해

- 민간경상보조관련, 반국가·반체제 활동에 동조하는 듯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고, 지원기준이 보다 엄정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제정이 좋은 민간단체에도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용역비관련, 외부용역보다 인권위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하여 현장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된 경향.
- 인권법령정보시스템관련, 국회·헌법재판소 등이 판단해야 할 법령의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주도하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음.
- 인권청문회관련, 국군포로인권문제·결식아동 등 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인권청문회가 운영될 필요.
- 동북아인권워크숍 예산에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지 여부.
- 기타사항으로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인권위 차원의 프로그램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과다지급하고 있는 청사업차료 관련하여 독립청사확보계획 여부 및 북한 인권관련 연구사업의 예산반영현황 등.

7. 부패방지위원회

- 용역비 중 중복편성 내지 불필요한 예산계상이 있다고 보이며, 용역비가 전체예산의 10%에 이르는 규모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여부

5. 대법원 소관

- 사법연수원생 2년생 보수증 과다 계상된 1개월분 11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국선변호 확대에 대비한 국선변호료 6억원, 단일호봉제 시행에 대비한 재판업무지원비 4억원을 각 증액하기로 하였음.

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APF에 대한 기부금 예산안 1억원에 관한 사항임. APF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등의 취지에 대하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인권위 조직이 아직 일천하고 APF 가입도 얼마 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여타 회원국들의 APF 재정지원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예산액 1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인권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고 당초 지원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억원의 예산중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에 관하여는, 외부용역보다는 인권위 내부 직

원들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현장감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전반적으로 과다하고 방만하게 시행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용역비 예산 8억원중 1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용역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다만, 이러한 삭감과 관련하여, 설립초기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자료축적 및 사업수행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비의 삭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음.

- 그동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미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 등을 통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2003. 4월 우리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촉구함에 따라 인권위 내부에 '북한인권연구팀'이 구성된 바 있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북한인권 연구관련사업이 빠져 있으므로, 북한인권관련 연구사업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함으로써 북한인권연구팀, 북한인권관련 간담회 및 심포지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7.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 용역비 중 "부패통제에 있어서 시민참여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과 "외국 부패방지 우수교재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은 각각

4. 헌법재판소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 수정의결 [별표3 참조]

- 베니스위원회분담금 5,880만원 삭감

5. 대법원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 수정의결 [별표4 참조]

- 사법연수원보수 11억원 삭감
- 국선번호료 6억원 증액
- 재판업무지원비 4억원 증액

나.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다. 국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6. 국가인권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 수정 의결 [별표5 참조]

- 인권보호 정책 및 제도 구축 (실태조사 용역비) : 1억원 감액
- 민간경상보조 : 5천만원 감액
- APF활동지원 기부금 : 5천만원 감액
- 북한인권연구사업 : 1억 5천만원 증액

7. 부패방지위원회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별표6 참조]

- 정책기획실 기본경비 1,500만원 삭감
- 홍보협력국 기본경비 2,000만원 삭감

- 신고심사국 기본경비 3,800만원 삭감

VIII.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1. 법무부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수행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의 1일 단가가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2. 법제처

법제처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5,200만원)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의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별표 5>

2004년도세입예산안수정내역

국가인권위원회(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항-세세항)	정부제출안 (A)	수정안 (B)	증(Δ)감 (B-A)	수정 사유	비고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 (용역비) (1111-212)	982	882	Δ100	○ 연구개발 용역비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과다·방만. ○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직원을 활용한 실태조사로 현장 감 있는 정책 수립 필요	
북한인권연구 (1111-214)	-	150	150	○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미 국무부인권보고서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 적으로 거론된 점 등을 감안, 북한인권관련 연구사업 을 신설.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 (1151-212)	200	150	Δ50	○ 민간단체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고, 당초 지원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의 일부 발생 등을 고려.	
APF활동지원 (1151-219)	100	50	Δ50	○ APF 가입이 일년이 채 안되고, APF 회원국별 재정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	
소 계			Δ50		
세출순계	19,667	19,617	Δ50		

<별표 6>

2004년도세출예산안수정내역

부패방지위원회(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항-세세항)	정부제출안 (A)	수정안 (B)	증(Δ)감 (B-A)	수정 사유	비고
정책기획실 기본경비 (1111-151)	602	587	Δ15	· 주요사업비와 중복되는 연구개발비(부패통 계에 있어서 시민참여 방안) 삭감	
홍보협력국 기본경비 (1121-151)	370	350	Δ20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외국의 부패방지 우수 교재 조사분석) 삭감	
신고심사국 기본경비 (1131-151)	559	521	Δ38	· 불필요한 공공요금및제세 삭감	
소 계	1,531	1,458	Δ73		
합 계(부방위 전체)	16,432	16,359	Δ73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랑별 설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1.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장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관	항			
장 130	일반행정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131	일반행정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1100 인권 행정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국가인권위원회 세출 합계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2. 정 원 및 봉 급

(단위 : 인, 천원, \$)

구분 세항별	국 무 위 원 상	차 관 (급)	일 반 직									기 타 직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1101 기관운영	1	3	1	5	2	26	45	33		33	-	-	32	181	2,963,128
합 계	1	3	1	5	2	26	45	33	33	-	-	32	181	2,963,128			181	2,963,128

3. 기 타 직 보 수 활 용 현 황

(단위 : 인, 천원, \$)

구분 세항별	전문직	정원경찰	상임위원 및 감사	시 보 공무원	공익근무 요 원	전공의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1101 기관운영	15	1	-	-	13
합 계	15	1	-	-	13	-	29	727,087	-	-	29	727,087

4. 차 량 정 수 및 경 비 현 황

(단위 : 대, 천원)

세항별 구분	승 용	지 프	승 합	좌석동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대수	예산액	대수	예산액	대수	예산액
1101 기관운영	5	-	2	-	7	64,975	-	-	7	64,975
합 계	5	-	2	-	7	64,975	-	-	7	64,975

5. 세 출 예 산 사 항 별 설 명

(단위 : 천원, \$)

항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세 항	사 항				
장 130	일반 행정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관 131	일반 행정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항 1100	인권 행정	(\$184,118) 18,918,744	-	(\$184,118) 18,918,744	
1101	기관 운영	8,224,071	-	8,224,071	
	1. 인 건 비	7,199,410	-	7,199,410	1. 정원 181명(별도정원 1명 포함) 7,199,410
	2. 주요사업비	1,024,661	-	1,024,661	
	가. 언론 모니터링 및 캠페인	75,200	-	75,200	<사업개요> 인권 캠페인 전개 및 언론 매체에 의한 인권 침해·차별 관련 사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 권고 및 정책 반영 <경비내역> 1.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캠페인 경비 75,200
	나. 진정안내 및 인권의식 홍보	357,100	-	357,100	<사업개요> 진정 안내 및 인권 홍보물 등 제작·배포, 지하철 광고 <경비내역> 1. 지하철 광고 및 홍보물 제작·배포 경비 357,100

(단위 : 천원, \$)

항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세 항	사 항				
1102 기관운영기본사업비	다.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423,274	-	423,274	<사업개요> 위원회 소식지 및 인권관련 월간지 발간·배포 <경비내역> 1. 인권월간지 및 소식지 발간·배포 경비 423,274
	라.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방안	169,087	-	169,087	<사업개요> 상담실무경험자를 위촉, 인권관련 지식 교육을 통하여 인권상담 전문가로 활용 <경비내용> 1. 전문상담요원 양성 및 운용 169,087
	1. 기본사업비	5,237,120	-	5,237,120	
		5,237,120	-	5,237,120	
1111 인권정책	1. 주요사업비	978,300	-	978,300	
	가. 청문회운영	978,300	-	978,300	
		34,000	-	34,000	<사업개요> 인권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하는 청문회 운영 <경비내용> 1. 청문회 운영 34,000
	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944,300	-	944,300	<사업개요>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관련 법령·문헌조사 및 중장기 인권보호 국가실행계획(NAP) 수립 <경비내용> 1. 인권상황 실태 조사 843,000 2. 문헌번역 및 NAP 수립 101,300

(단위 : 천원, \$)

항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세 항	사 항				
1112 인권정책기본사업비	1. 기본사업비	163,723	-	163,723	
		163,723	-	163,723	
1121 행정운영	1. 주요사업비	1,143,063	-	1,143,063	
	가. 인권위정보화	1,143,063	-	1,143,063	<사업개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비내역> 1.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구축 336,963 2. ITI민원처리시스템 구축 166,100 3. 정보시스템 운영경비 640,000
		1,143,063	-	1,143,063	
1122 행정운영기본사업비	1. 기본사업비	265,799	-	265,799	
		265,799	-	265,799	
1132 인권침해조사기본사업비	1. 기본사업비	226,747	-	226,747	
		226,747	-	226,747	
1141 차별조사	1. 주요사업비	200,140	-	200,140	
	가. 인권 침해차별 조사 및 구제 기법 개발	200,140	-	200,140	<사업개요>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조사 실무능력 제고 <경비내역> 1. 차별행위판단기준·조사구제기법 및 방법론 개발 200,140

(단위 : 천원, \$)

항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세 항	사 항				
1142	차별조사기본사업비	111,387	-	111,387	
	1. 기본사업비	111,387	-	111,387	
1151	교육협력	(\$118,989)		(\$118,989)	
		2,018,481	-	2,018,481	
	1. 주요사업비	(\$118,989)		(\$118,989)	
		2,018,481	-	2,018,481	
	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1,449,574	-	1,449,574	<p><사업개요> 대국민 인권의식 제고 및 차별별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인권홍보 및 인권시민단체 지원</p> <p><경비내역> 1. 인권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 223,750 2. 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 200,000 3. 차별예방과 인권문화 확산 홍보물 개발·제작 등 1,025,824</p>
	나. 인권교육교재 발간	320,200	-	320,200	<p><사업개요> 다양한 인권교육 교재 발간 및 인권교육 방법론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인권교육 효과 제고</p> <p><경비내역> 1. 인권교육 교재 및 방법론 개발 320,200</p>

(단위 : 천원, \$)

항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 △ 감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
세 항	사 항				
	다. 국제회의 참석	(\$95,727)		(\$95,727)	
		210,635	-	210,635	<p><사업개요> UN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등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하여 국제인권기구 제도 파악 및 협력 방안 모색</p> <p><경비내역> 1. 국제회의 참석경비 (\$95,727) 210,635</p>
	라.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사업	(\$23,262)		(\$23,262)	
		38,072	-	38,072	<p><사업개요> 주요국 국가인권기구간 직원교류 및 훈련을 통해 각국의 인권정보 교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연대 강화</p> <p><경비내역> 1. 국가인권기구간 직원교류 및 훈련 경비 (\$23,262) 38,072</p>
1132	교육협력기본사업비	(\$19,729)		(\$19,729)	
	1. 기본사업비	168,757	-	168,757	
		(\$19,729)		(\$19,729)	
		168,757	-	168,757	
1172	인권자료실기본사업비	(\$45,400)		(\$45,400)	
	1. 기본사업비	181,156	-	181,156	
		(\$45,400)		(\$45,400)	
		181,156	-	181,156	
국가인권위원회 세출 합계		(\$184,118)		(\$184,118)	
		18,918,744	-	18,918,744	

2003년도법제사법위원회소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법무부소관
법제처소관
감사원소관
헌법재판소소관
대법원소관
국가인권위원회소관
부패방지위원회소관

법제사법위원회

2003년도법제사법위원회소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2. 10.
법제사법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예산안

가. 법무부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교도작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 세입 및 세출

나. 법제처소관

- 일반회계 : 세출

다. 감사원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라. 헌법재판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마. 대법원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등기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 세입 및 세출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일반회계 : 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2. 10. 1.

나. 회부일자 : 2002. 10. 2.

다. 상정일자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2002. 10. 21)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제6차 위원회(2002. 10. 22)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감사원·법제처)

제7차 위원회(2002. 10. 23)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법무부)

제8차 위원회(2002. 10. 24) 상정·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위원회 심사보고·의결

(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감사원·
법제처·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제1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2002. 10. 24) 상정·의결

(국가인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감사원·법
제처·헌법재판소·법무부·대법원)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감리비	3억7,300만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8억원

2002년도 예산	151억7,205만2천원
증(△)감	17억4,896만3천원 (11.5%)
○ 주요증(△)감요인	
인건비	12억4,728만8천원
기본사업비	2억 999만2천원
주요사업비	2억9,169만3천원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출

○ 규 모

2003년도 예산안	189억1,900만원
2002년도 예산	192억 300만원
증(△)감	△2억8,400만원(△1.5%)

○ 주요증(△)감요인

인건비	18억9,000만원
기본사업비	△30억1,700만원
주요사업비	8억8,400만원

※ 2002년도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2002년도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출

○ 규 모

2003년도 예산안	169억2,101만5천원
------------	---------------

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음.

1. 인권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사업

인권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사업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상담업무를 전문 상담원을 채용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권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1억 3,800만원) 대비 3,100만원 증가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인권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계	(138)	169	31	22.5	
○ 상담원 양성 교육		19			
○ 전문 상담원 사례급		150			

동 사업은 인권관련 상담실무 경험자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

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해서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수렴하여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담업무에 임하는 전문 상담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성 및 전문성과 함께 장기근무 가능성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그런데, 2002년 10월 현재 근무중인 8명의 전문상담원 중 6명(75%)이 금년 6월에 사법시험 2차에 응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인권문제를 적절히 상담해 줄 수 있는 감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장기근무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하여도 동 사업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권상담서비스 전문성 제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원위촉에 관한 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의 취지에 맞게 일정기간의 인권관련 상담경력이 있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이 적절히 채용되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청문회 운영사업

청문회 운영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3조) 및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에 따라 특정 인권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대표자·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2,900만원) 대비 5백만원 증가한 3,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청문회 운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계	(29)	34	5	17.2	
자료집 인쇄비 등		19			
청문회 운영경비		3			
청문회 참석 증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12			

2002년도 청문회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상 총 8회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0월 현재까지 동 사업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8. 26) 1회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 토론회는 청문회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 및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공청회 형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청문회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니라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2003년도에 12회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청문회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청문회 사업추진 노력과 충실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인권단체가 대행토록 함으로써 범국민적 인권의식의 확산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권신장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인권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70%)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안	증(△)감	
			금액	%
계		200	200	순증
○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참가 - 1천만원 × 5회		50		
○ 학술대회 및 인권교육 강좌 - 5백만원 × 10회		50		
○ 인권실태조사 및 대국민홍보사업 - 3백만원 × 20회		60		
○ 인권증진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 2백만원 × 10회		20		
○ 기타 인권증진 관련 「특화사업」 등 - 5백만원 × 4회		20		

이와 같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계상을 신청한 경우에 편성하고,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①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②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③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그런데, 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공식적인 예산신청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중 인권실태조사 및 대국민홍보사업,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참가, 인권증진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은 별도의 유사한 예산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인권단체 협력·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국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인권관련 시민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권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나, 시민단체의

자생력과 이를 근거로 한 독립성을 훼손시킬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계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중 "비차별 인권문화 홍보물 제작"은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용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권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제"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관련 영상제·음악제·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권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5억 2백만원과 5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비차별 인권문화 홍보물 제작,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안	증(△)감		비 고
			금액	%	
계	(331)	1,026	695	210.0	
○ 비차별 인권문화 홍보물 제작	(297)	502	205	69.0	
- 인권다큐멘터리 및 인권애니메이션 제작		363			
- 인권포스터 및 기타 경비		139			
○ 세계인권선언기념문화제	(34)	524	490	1,441.2	
- 사진전, 음악제 등		313			
- TV, 신문 광고		211			

그런데, 이 중에서 “비차별 인권문화 홍보물 제작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진집·인권홍보만화·인권다큐멘터리·인권에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제작된 홍보물들은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제” 기간 동안(12.5~12.14) 상영되거나 전시될 계획임.

비차별 인권문화 홍보물 제작사업을 통하여 제작된 홍보물(5억 200만 원)들이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제 행사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총 예산은 10억 2,600만원이 된다고 하겠음.

인권전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만큼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일상 생활 속에서 터잡아 가며 서서히 형성되어야 할 인권의식이 홍보나 광고등을 통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지수 향상 및 세계속에서의 인권선진 국가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5.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법무부 인권부서 예산의 중복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법무부 인권부서(인권과) 예산의 중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5개의 항목에서 업무상 중복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법상(제19조) 법무부 인권부서와의 중복업무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법무부 법무실의 정상적기본사업비중에서 인권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예산을 종합해 보면 4,419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비록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법령상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인권상황 홍보사업, 세계인권선언 기념 행사,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 일부 사업이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있음.

2003년도 법무부 법무실(인권과)의 인권정책관련 사업예산

(단위:천원)

내역	
(법무실기본사업비-경상적기본사업비)	44,195
(201-01) 일반수용비	16,834
2. 법의 날 및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인쇄	2,000
3. 국제인권규약관련 보고서 등 발간	1,834
8. 법의 생활화 및 인권 홍보관련 경비중 - 법률 봉사활동 및 인권상황 홍보 활동경비	13,000
(201-11) 재료비	540
1. 기념식장 현판(인권의 날, 법의 날 행사)	540
(202-01) 국내여비	3,412
2. 인권관련 자료수집	790
3. 인권단체 지도·점검 및 법의 생활화	2,622
(202-02) 국외여비	21,999
8. 유엔 인권위원회	
가. 본회의(스위스)	3,565
나. 소위원회(스위스)	3,565
9.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10일)	3,782
17. 외국의 인권위원회제도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	
가. 유럽지역	5,344
나. 호주, 뉴질랜드	5,743
(204-01) 일반업무비	1,410
1. 인권단체 임원 간담회 경비	450
2. 인권문제 실무 협의회	300
3. 인권관련 부처 담당관 회의운영	360
4. 국제인권단체 임원등 관계자 면담	300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두 기관간의 업무중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인권상황 홍보사업 및 인권단체 지도·점검 등 구체적인 인권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관련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권정책의 체계적·통일적 수행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별표1】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경비별	2002년 예산(A)	2003년 예산 요구			2003년 예산안		
		요구액(B)	증△감 (B-A)	%	조정액(C)	증△감 (C-A)	%
계	19,203	28,769	9,566	49.8	18,919	△284	△1.5
1. 인 권 비	5,309	7,345	2,036	38.3	7,199	1,890	35.6
2. 기본사업비	9,372	9,102	△270	△2.9	6,355	△3,017	△32.2
-경상적기본사업비	8,944	8,624	△320	△3.6	5,887	△3,057	△34.2
-기준성기본사업비	380	420	40	10.5	411	31	8.2
-교육훈련기본사업비	48	58	10	20.8	57	9	18.7
3. 주요사업비	4,522	12,322	7,800	172.5	5,365	843	18.6
-언론모니터링 및 캠페인	77	294	217	281.8	75	△2	△2.6
-긴정안내 및 인권 의식 홍보	1,044	684	△360	△34.5	357	△687	△65.8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발간사업	134	1,012	878	652.2	423	289	215.7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138	190	52	37.7	169	31	22.5
-청문회 운영	29	47	18	62.1	34	5	17.2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753	1,828	1,075	142.8	944	191	25.4
-정보화 사업비	1,487	2,435	948	63.8	1,143	△344	△23.1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및구제기법	-	751	751	순증	200	200	순증
-인권문화 확산교육 홍보 및 민간지원	331	3,688	3,357	1,014.2	1,450	1,119	338.1
-인권교육 교재	296	858	562	189.9	320	24	8.1
-국제회의 참석	181	381	200	110.5	211	30	16.6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	154	154	순증	39	39	순증
-인권논문 공모	52	-	△52	순감	-	△52	순감

【별표2】

2003년도 예산안 주요증감 명세

(단위:천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증 감	
			금액(%)	사 유
인건비	5,308,644	7,199,410	1,890,766 (35.6)	- 2002년 예비비 10개월분 계상 → 2003년 예산안 12개월분 반영 - 공무원 보수인상 계획에 따른 처우개선(3%)분 반영 -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추가 반영
주요사업비	4,522,450	5,364,645	842,195 (18.6)	-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등(432백만원) - 인권침해차별 조사 및 구제기법 개발(200백만원) -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210백만원)
기본사업비	9,372,144	6,354,689	△3,017,455 (△32.2)	- 청사 임차보증금(17억원) 및 사무집기, 사무기기구입비 등(18억원) 완료 - 각종 경비 개월차분 반영 등
계	19,203,238	18,918,744	△284,494 (△1.5)	

나. 법제처소관

- 명예퇴직수당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법제연구사업이 법무부 및 통일부 등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며,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헌법재판소소관

- 배니스위원회에 재판관과 연구관 참석이 타당한지 여부
- 재판관의 동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재판의 지연이 되지 않는지
- 동위원회 이외의 헌법관련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의 필요성
- 가판신문 구입의 필요성

라. 감사원소관

- 감사원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와 업무 및 예산이 중복되므로 폐지함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여부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같은 일반적 자문기구 보다는 특정한 감사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구가 더 필요함.
- 감사원은 감사·사정기관이지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님.
- 감사원의 전체예산 대비 특수활동비의 구성비율이 타부처에 비하여 높은 바, 세부편성내역을 공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마. 대법원소관

- 재판원본의 마이크로필름화 및 복제예산을 삭감 필요성 여부
- 사법보좌관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삭감 필요성 여부
- 소송구조 체당금의 증액 필요성
- 조정위원의 사례금 증액 필요성 여부
- 국선번호료 예산 증액 필요성 여부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비(2억원)는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편성을 인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임.
- 인권위원회 예산의 대부분이 인권홍보 책자나 인권영화 등 실질적인 인권보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성 행사 소요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음.
- 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부패방지 홍보를 위한 예산의 과다 계상 여부
-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재검토 및 지원방법의 적절성 여부

라. 헌법재판소소관

- 먼저, 배니스위원회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디만, 예산 항목의 명칭을 “배니스위원회”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배니스위원회가 아니라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편성명칭을 변경하도록 함.
- 가판신문 구독 예산은 전부처가 공통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바, 그 필요성 여부는 전부처를 상대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의결함.

마. 대법원소관

-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송구조예산·민사조정예산 및 국선번호료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증액이 필요함.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올해 최초로 편성된 예산 안임을 감안하여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되, 인권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홍보관련 사업 예산은 그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된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당해 예산규모를 줄여서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함.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부패방지위원회의 주요사업 중 부패방지 교육·홍보사업 예산으로 19억 6,23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홍보예산 중 TV 및 일간지 광고비(15억 9912만원)가 과다하게 계상된 점을 고려하여 7억 9912만원을 감액함.
- 청렴그룹등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조장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처단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함.

7. 심사결과

가. 법무부소관

- (1) 일반회계 세입·세출 : 수정의결[별표1 참조]
 - 장기해외연수비 5억6,283만원 증액
 - 마약수사활동비 8억 754만원 증액
 - 갱생보호사업비 2억원 증액
 - 대국민여론조사실시비 3,000만원 감액
- (2)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나. 법제처소관

- (1) 일반회계 세출 : 원안의결

다. 감사원소관

- (1)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라. 헌법재판소소관

- (1)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마. 대법원소관

- (1)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

- (1)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사. 부패방지위원회소관

- (1)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별표2 참조]
 - 부패방지교육홍보비 7억9,911만8천원 삭감
 - 청렴그룹등 민간단체지원비 2억원 삭감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가. 감사원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2002년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와 그 업무 및 예산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2004년도 예산에서는 전액삭감 내지 조정할 것을 촉구함.

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올해 최초로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되, 인권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홍보관련 사업 예산은 그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된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당해 예산규모를 줄여서 편성할 것을 촉구함.

과목	세출예산액	국유재산(국유재산) -신선도이행액	기타비(사용액)	진출증감액	이동차이액	세출예산잔액	지출액	다중년도이행액	결손액	사업개요
11000 일반회계	18,918,744,000	866,210,000	0	-288,000,000	0	19,904,954,000	17,068,214,390	1,159,032,000	1,677,707,610	
11000 일반회계	18,918,744,000	866,210,000	0	288,000,000	0	19,904,954,000	17,068,214,390	1,159,032,000	1,677,707,610	
11000 일반회계	18,918,744,000	866,210,000	0	-288,000,000	0	19,904,954,000	17,068,214,390	1,159,032,000	1,677,707,610	
1101세입 기금보통	8,224,071,000	0	0	206,000,000	0	8,224,071,000	7,415,236,830	0	808,834,170	
101회기후금	3,678,938,000	0	0	163,000,000	0	3,642,938,000	3,638,744,460	0	4,193,540	
102회수익	658,635,000	0	0	45,000,000	0	703,635,000	700,186,420	0	3,448,580	
100회비상규격보수	751,087,000	0	0	-208,000,000	0	543,087,000	77,924,370	0	465,162,630	
201회권리운용비	929,527,000	0	0	0	0	929,527,000	899,120,180	0	30,406,820	
202회여비	3,634,000	0	0	0	0	3,634,000	1,702,000	0	1,932,000	
204회업무추진비	589,500,000	0	0	0	0	589,500,000	495,840,940	0	103,659,060	
206회특리부담비	1,415,497,000	0	0	0	0	1,415,497,000	1,244,304,460	0	171,192,520	
206회종려비	50,000,000	0	0	0	0	50,000,000	50,000,000	0	0	
301회보상금	136,253,000	0	0	0	0	136,253,000	107,613,960	0	28,639,020	
1102세입 기금운용기부금보수	5,237,120,000	0	0	-80,000,000	0	5,237,120,000	5,062,667,200	80,000,000	94,452,800	
100회비상규격보수	40,034,000	0	0	80,000,000	0	40,034,000	40,019,530	0	14,470	
201회권리운용비	3,985,494,000	0	0	-53,000,000	0	3,932,494,000	3,836,818,280	80,000,000	15,875,710	
202회여비	135,012,000	0	0	0	0	135,012,000	105,042,880	0	29,969,120	
204회업무추진비	906,590,000	0	0	0	0	906,590,000	662,004,880	0	44,585,020	
404회상업비	105,000,000	0	0	-27,000,000	0	78,000,000	74,866,190	0	3,133,810	
407회경상회비	64,990,000	0	0	80,000,000	0	144,990,000	144,112,330	0	877,670	
1111세입 인권헌법	978,300,000	83,500,000	0	0	0	1,061,800,000	617,701,950	395,480,000	48,618,050	
201회권리운용비	119,800,000	0	0	0	0	119,800,000	92,228,560	0	27,571,440	

과목	세출예산액	국유재산(국유재산) -신선도이행액	기타비(사용액)	진출증감액	이동차이액	세출예산잔액	지출액	다중년도이행액	결손액	사업개요
204회업무추진비	6,500,000	0	0	0	0	6,500,000	6,156,270	0	343,730	
206회종려비	840,000,000	83,500,000	0	0	0	923,500,000	517,184,000	395,480,000	10,836,000	
302회배상금	12,000,000	0	0	0	0	12,000,000	2,136,120	0	9,864,880	
1102세입 인권헌법기부금보수	163,723,000	0	0	0	0	163,723,000	121,156,150	0	42,567,850	
201회권리운용비	135,885,000	0	0	0	0	135,885,000	93,654,570	0	42,230,430	
202회여비	12,838,000	0	0	0	0	12,838,000	12,822,930	0	15,070	
204회업무추진비	15,000,000	0	0	0	0	15,000,000	14,677,660	0	322,350	
1101세입 기금보통	1,143,063,000	680,924,000	0	0	0	1,823,987,000	1,207,669,720	392,332,000	283,985,280	
201회권리운용비	554,652,000	0	0	0	0	554,652,000	283,148,510	0	261,503,490	
202회여비	1,514,000	0	0	0	0	1,514,000	1,443,900	0	70,100	
204회업무추진비	3,600,000	0	0	0	0	3,600,000	3,573,180	0	26,820	
206회종려비	259,843,000	680,924,000	0	0	0	940,767,000	798,965,100	126,469,000	15,332,900	
407회경상회비	323,454,000	0	0	0	0	323,454,000	110,539,030	205,883,000	7,051,970	
1102세입 인권헌법기부금보수	265,799,000	0	0	0	0	265,799,000	108,246,290	150,000,000	7,550,710	
201회권리운용비	239,839,000	0	0	0	0	239,839,000	83,758,580	150,000,000	6,080,420	
202회여비	6,860,000	0	0	0	0	6,860,000	5,622,900	0	1,237,100	
204회업무추진비	19,000,000	0	0	0	0	19,000,000	18,666,910	0	133,190	
1102세입 인권헌법기부금보수	226,747,000	0	0	0	0	226,747,000	124,169,060	40,000,000	62,577,940	
204회권리운용비	92,361,000	0	0	0	0	92,361,000	30,320,200	40,000,000	22,040,800	
202회여비	71,186,000	0	0	0	0	71,186,000	71,182,230	0	3,770	
204회업무추진비	14,000,000	0	0	0	0	14,000,000	13,821,030	0	178,970	
304회보상금	30,000,000	0	0	0	0	30,000,000	8,000,000	0	22,000,000	
302회배상금	19,200,000	0	0	0	0	19,200,000	845,600	0	18,354,400	
기타세입 특별교부금보수	200,140,000	0	0	0	0	200,140,000	67,071,070	35,500,000	97,568,930	

과목	세출예산액	(수입내역/수입금)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월결의잔액	세출예산잔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품공액	사업개요
201목 원서출발비	47,640,000	0	0	0	0	47,640,000	31,571,070	0	16,068,930	
204목 업무추진비	2,500,000	0	0	0	0	2,500,000	0	0	2,500,000	
205목 송환비	150,000,000	0	0	0	0	150,000,000	35,500,000	35,500,000	79,000,000	
1112세항 직할조사기동사업비	111,387,000	25,286,000	0	0	0	136,673,000	76,670,120	20,000,000	38,002,880	
201목 관서운영비	72,605,000	25,286,000	0	0	0	97,891,000	45,564,630	20,000,000	32,336,370	
202목 여비	25,582,000	0	0	0	0	25,582,000	24,828,160	0	753,840	
204목 업무추진비	9,000,000	0	0	0	0	9,000,000	8,217,330	0	782,670	
595목 배상금	4,200,000	0	0	0	0	4,200,000	70,000	0	4,130,000	
1151세항 교육협력	2,016,481,000	60,500,000	0	0	0	2,076,981,000	1,827,036,000	105,720,000	146,225,000	
201목 관서운영비	993,602,000	0	0	0	0	993,602,000	987,354,770	12,000,000	94,247,230	
202목 여비	204,179,000	0	0	0	0	204,179,000	163,093,200	0	21,085,800	
204목 업무추진비	58,700,000	0	0	0	0	58,700,000	43,884,560	0	14,815,440	
596목 배상금	562,000,000	60,500,000	0	0	0	622,500,000	526,531,540	93,720,000	2,246,460	
204목 민간인집이전	200,000,000	0	0	0	0	200,000,000	166,171,910	0	13,828,090	
1152세항 교육협력기본사업비	168,757,000	16,000,000	0	0	0	184,757,000	172,106,110	0	12,650,890	
201목 관서운영비	101,103,000	16,000,000	0	0	0	117,103,000	105,640,920	0	11,462,080	
202목 여비	62,974,000	0	0	0	0	62,974,000	52,097,790	0	876,210	
204목 업무추진비	14,680,000	0	0	0	0	14,680,000	14,367,400	0	312,600	
1172세항 민원처리본사업비	181,156,000	120,000,000	0	0	0	301,156,000	266,462,890	0	34,673,110	
201목 관서운영비	83,656,000	0	0	0	0	83,656,000	76,013,200	0	5,642,800	
204목 업무추진비	1,500,000	0	0	0	0	1,500,000	1,428,650	0	71,350	
407목 자산취득비	96,000,000	120,000,000	0	0	0	216,000,000	187,040,640	0	28,959,360	
국가정보원원회 소관합계	16,916,746,000	986,216,000	0	-288,000,000	283,000,000	19,004,954,000	17,063,214,390	1,359,032,000	1,677,707,610	

[세출결산보고서/일반회계/국가정보원]

과목	세출예산액	(수입내역/수입금)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월결의잔액	세출예산잔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품공액	사업개요
30정 일반행정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131관 일반행정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1106항 국가정보원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1111세항 정보활동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203목 특수활동비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국가정보원 소관합계	290,777,797,000	5,080,000,000	0	0	0	295,857,797,000	287,984,163,000	4,170,000,000	3,703,634,000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일 반 회 계]

2004. 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김대현

목 차

I. 개 황	1
II. 일반회계	1
1. 세 입	1
2. 세 출	2
III. 검토의견	4
1. 인권상담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	4
2.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5
3.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7
4.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	12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의 조사·구제에 관한 사항	16
※ 참고자료	21
1. 2002년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21
2. 2003년도 국외출장 현황	22

2004년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I. 개 황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뿐임.

II.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예산액	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	57,999	47,999	10,000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5,800만원을 정수 결정하여 4,800만원을 수납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비용 과태료 1,000만원은 미수납됨.

2. 세 출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액	이용 및 이체액				
18,918,744	986,210	-	-	-	19,904,954	17,068,214	1,159,032	1,677,708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189억 1,87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99억 49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인 170억 6,821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6억 7,771만원임.

- (1) 지출액 170억 6,821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보면,
 - o 기본사업비에 59억 3,35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대비 34.8%를 차지하고 있고,
 - o 주요사업비로 47억 1,15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27.6%를, 인건비로 64억 2,321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37.6%를 차지하고 있음.
- (2) 전용액은 2억 8,8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중 기본급 및 수당부족(2억 800만원)과 관용차량 및 정보화장비부족(8,000만원)에 따른 것임.
- (3) 이월액은 11억 5,903만원으로, 이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

역 등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 (4) 불용액은 16억 7,771만원으로, 결원된 직원의 충원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함.

Ⅲ. 검토의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인권상담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예산 총 1억 6,909만원중 1억 6,85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인권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사례급)에 1억 5,000만원, 상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55만원을 지출하였음.

인권상담센터는 인권관련 경험자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에 대하여 전화 및 대면상담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여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되었음.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인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등 조사·구제업무와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진정·상담·안내 접수건수가 19,416건에 이르는 점과 2002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46.9%의 높은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

무임.

그러나, 현재 인권상담센터에는 10명의 상담원이 일당 5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이직률이 잦은 명예직 자원활동가들이 담당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책임성,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음.

따라서 상담원의 정규직화 등 인력운영상의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정	상담	안내
2002년도	13,217	2,790	2,869	7,558
2003년도	19,416 (46.9% 증)	3,815 (36.7% 증)	5,261 (83.4% 증)	10,340 (36.8% 증)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2003. 12. 31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은 186명(인권위원 포함, 파견직원 제외)으로 이 중 연인원 기준 약 39%인 72명(2회 이상 출장자

12인 포함)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해 2억 6,759만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연간 29차례에 걸친 국외 출장의 총출장일수(팀별 출장일수의 합계)는 286일에 달하고 있음(참고자료 2 : 2003년도 국외출장현황 참조).

이와 같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중 상당수가 해외출장을 가고, 더구나 2회 이상 출장자가 적지 않으며, 출장일수 또한 상당히 많게 집계된 것은 신설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가 계속 급증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므로 잦은 해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 및 ESCR-NET 등 각종 NGO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출장은 많은 의화를 들어가며 집행할 만큼 실익이 있거나 추가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외출장현황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출장횟수	출장인원	지출내역
29	72(중복출장 12인)	267,588

3.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개 과제의 인권상황실태조사, 15개 인권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수립·행정공무원인권교육 책자집필·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으로 총 계약액은 19억 1,863만원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3개 과제에 계약액은 8억 2,916만원이며 이를 외부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에 산의 절감과 아울러 현 인권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현장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를 위해 외부용역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둘째, 15개 시민단체의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경우 형식상 예산편성 과목은 연구용역개발비(예산과목 206-01)로 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모·심사·평가 등을 별도로 행하는 데 따르는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셋째,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의 계약 또는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현실에서 위원 또는 직원이 과거 근무했거나 관련되었던 시민단체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원칙인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넷째,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그 용역결과에 대하여 발표케 하여 그 과정과 용역결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용역사업중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21건이 사고이월되었는 바 상당수 사업이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6건이 2003. 12. 16에, 2건은 2003. 12. 19에 사업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이월이 사업내실화 추구로 인한 기간부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계획성 없이 집행된 데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히 계획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관	계약액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29,000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4,517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두 레 방	27,000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23,887
5	차별관련 법령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5,000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68,700
7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20,000
8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9,000
9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23,000
10	군 수사과정 및 군 영향 인권 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29,000
11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	29,000
12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39,900
13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40,360
14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73,000
15	주거민권제층 사회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0,900
16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경원대학교	32,900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49,000
18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8,000
19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한국계활복지대학	28,000
20	연령, 학벌, 학력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22,000
21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NAP)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22,000
22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9,000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86,000
계			829,164

2003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분 야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비
성적소수자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민주인론운동시민연합	9,200
"	2003 여름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및 대학 순회 인권학교	동성애자인권연대	6,434
"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	끼리끼리	5,675
아동 및 청소년	아동인권향상과 가족기능회복	안산YMCA	10,750
"	아동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0,600
"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	한국청년연합회(KYC)	7,540
"	1318 너의 이름은?	울산YWCA	6,250
여성	상담활동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한국여성민우회	1,610
"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기독교여성성상담소	8,025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및 모성보호 사업	이주여성인권센터	11,530
"	아클라(AACLA)인권학교	아시아의 친구들(교양)	9,500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찾기주기	지구촌사랑나눔(성남)	13,875
장애인	장애우인권지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2,697
"	장애인과 하나되는 어울마당	북포경실련	3,464
"	청소년과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야간학교	참여자치21(광주)	7,850
합 계			125,000

기타 용역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수주자	계약액	비고
인권교육발전5개년계획	성공회대(한홍구)	59,860	
행정공무원인권교육'책자집필	이성훈외 8인	18,806	
초중고인권교육과정개발	서울대(문용린)	39,300	
정신과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	중앙대	71,100	
인권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아이타스카스튜디오 외 3개사	312,400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시스월 외 1개사	463,000	
계		964,466	

4.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 경상보조)에 관한 사항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23개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원(정산결과 실 지원액: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그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동 사업은 예산집행상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첫째,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환경운

동연합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 부설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등)에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동 사업중 일부는 당초의 지원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둘째, 「환경운동연합」의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사업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은 다른 부처(환경부 또는 행정자치부, 여성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시민단체의 사업성격을 지니므로 당초의 사업취지 및 선정기준¹⁾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셋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위한 연대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사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성한 병역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의 이해를 돕는 교육용 프로그램제작에 국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병역기피 현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 인권옹호와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 인권관련 단체 등과 연대강화 등

이는 2002년도 연구용역 사업중 하나인 “한국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같은 조사·토론·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지 못한 사업선정이라고 생각됨.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되고 다수가 수급할 수 있는 분명한 선정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사업추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의 자격,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설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